



제437회국회(임시회)
제4차 법제사법위원회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미성년자 대상 특정범죄자에 대한
전자장치 부착기간 연장 등〉

■ 진중오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12990호)

2026. 7.

법 제 사 법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최 기 도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3
1. 미성년자 대상 특정범죄자에 대한 전자장치 부착기간 연장	3
2.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자에 대한 준수사항 부과 의무화	9
참고. 전자장치 부착대상 특정범죄의 종류, 법정형 및 부착기간	15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진중오의원 등 10인
2. 제 안 일 : 2025. 9. 15.
3. 회 부 일 : 2025. 9. 16.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서울 서대문구 초등학생 유괴 시도 사건을 비롯해 경기 광명, 제주 등 전국 각지에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약취·유인 및 그 미수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음. 이러한 범죄는 개별 가정의 불행에 그치지 않고 사회 전체에 심각한 불안과 공포를 확산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현행법은 미성년자 대상 범죄자에 대한 전자장치 부착 규정을 두고 있으나, 미성년자 대상 범죄의 심각성과 자기보호능력이 부족한 미성년자에 대한 보호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미성년자 대상 범죄자에 대한 전자장치 부착 가능기간이 충분히 길지 못하다는 지적이 있고,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에 대해서는 부착명령 선고 시 및 보호 관찰명령 선고 시 어린이 보호구역 등에서의 접근 금지 등 필요한 준수 사항의 부과가 의무화되어 있지도 않아 문제라는 지적이 있음.

이에 미성년자 대상 범죄자에 대한 전자장치 부착 가능기간의 하한과 상한을 높이고,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의 경우 부착명령 선고 시 및 보호관찰명령 선고 시 법원이 어린이 보호구역 등 특정지역·장소에의 출입금지를 준수사항으로 부과하도록 하여, 미성년자 대상 범죄의 재범을 방지하고 아동과 그 가족구성원들이 보다 안심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고자 함(안 제9조, 제9조의2 및 제21조의4).

III. 검토의견

1. 미성년자 대상 특정범죄자에 대한 전자장치 부착기간 연장

☐ 개정안은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특정범죄를 저질러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 받은 사람의 부착기간 하한을 연장하는 내용임(안 제9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9조(부착명령의 판결 등) ① 법원은 부착명령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기 간의 범위 내에서 부착기간을 정하 여 판결로 부착명령을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 하여 특정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u>부착기간 하한을 다음 각 호에 따른 부착기간 하한의 2배로 한다.</u>	제9조(부착명령의 판결 등) ① ----- ----- ----- ----- ----- ----- . <단서 삭제>
1. 법정형의 상한이 사형 또는 무기 징역인 특정범죄: 10년 이상 30년 이하 <단서 신설>	1. ----- ----- ----- ----- . 다만, 19세 미만의 사 람에 대하여 특정범죄를 저지른 경 우에는 20년 이상 30년 이하로 한 다.
2. 법정형 중 징역형의 하한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인 특정범죄(제1호 에 해당하는 특정범죄는 제외한다): 3년 이상 20년 이하 <단서 신설>	2. ----- ----- ----- ----- -. 다만,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특정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8년 이 상 20년 이하로 한다.

등의 행위는 성범죄와 같은 심각한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처벌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있으며, 미성년자 대상 유괴 범죄는 한 가정의 불행을 넘어 사회 전체에 심각한 불안과 공포를 확산시키는 요인이라는 인식에 따라,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특정범죄를 저질러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받는 피부착자에 대한 부착 기간의 하한을 현행보다 늘려 미성년자 대상 유괴 범죄⁴⁾ 등에 대한 감시 및 예방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임.

<최근 5년간 19세 미만 미성년자 약취·유인 사건 현황>

연도	19세 미만 미성년자가 피해자인 약취·유인 범죄 건 수	
	기수	미수
2020	104	56
2021	115	78
2022	133	89
2023	134	126
2024	144	92
2025. 8.	98	75

자료 : 경찰청

4)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자의 전자감독 접수 대상은 2020년 2명, 2021년 1명, 2022년 2명, 2023년 0명, 자료 : 2024 범죄예방정책 통계분석

□ 개정안이 입법화될 경우 19세 미만 대상 특정범죄의 법정형에 따른 전자장치 부착기간은 다음과 같음.

<개정안에 따른 특정범죄 법정형에 따른 부착기간 변화>

특정범죄 법정형	현행(20세 이상)	현행(19세 미만)	개정안(19세 미만)
법정형 상한 사형 또는 무기징역	10년 이상 30년 이하	20년 이상 30년 이하	20년 이상 30년 이하
징역형 하한 ⁵⁾ 3년 이상	3년 이상 20년 이하	6년 이상 20년 이하	8년 이상 20년 이하
징역형 하한 3년 미만	1년 이상 10년 이하	2년 이상 10년 이하	5년 이상 15년 이하

- 19세 미만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법정형 상한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인 특정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현행과 차이가 없고, 법정형의 징역형 하한이 3년 이상인 특정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부착기간 하한이 현행 6년에서 8년으로 2년 늘어나게 되며, 부착기간의 상한은 현행과 동일함. 징역형 하한이 3년 미만인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에는 부착기간 하한이 현행 2년에서 5년으로 3년 늘어나고, 부착기간의 상한은 10년에서 15년으로 5년 늘어나게 됨.
- 참고로, 2023년부터 2024년까지 2년간 전체 형 집행종료 후 전자장치 접수사건과 피해자가 19세 미만인 형 집행종료 후 전자장치

5) 형법 제42조에 따라 법정형의 하한은 1개월이며, 상한은 30년임.(가중하는 경우 50년)
 「형법」 제42조(징역 또는 금고의 기간) 징역 또는 금고는 무기 또는 유기로 하고 유기는 1개월 이상 30년 이하로 한다. 단,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에 대하여 형을 가중하는 때에는 50년까지로 한다.

접수사건의 부착기간별 현황은 다음과 같으며, 1년 이상부터 5년 미만까지의 부착 기간 비중은 크게 높지 않은 상황임.

<전체 형 집행종료 후 전자장치 접수사건 부착기간별 현황>

(단위 : 건)

기간 연도	1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20년 미만	20년 이상 ~30년 미만	30년 이상	계
2023	31	92	127	32	0	282
	11.1%	32.6%	45.0%	11.3%	0%	100%
2024	32	58	152	33	0	275
	11.6%	21.1%	55.3%	12.0%	0%	100%

자료 : 법무부

<피해자가 19세 미만인 형 집행종료 후 전자장치 접수사건 부착기간별 현황>

(단위 : 건)

기간 연도	1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20년 미만	20년 이상 ~30년 미만	30년 이상	계
2023	6	50	38	28	0	122
	4.9%	41%	31.1%	23%	0%	100%
2024	8	31	59	25	0	123
	6.5%	25.2%	48.0%	20.3%	0%	100%

자료 : 법무부

□ 개정안의 입법취지는 긍정적이나, 전자장치 부착기간의 장기화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전자장치 부착명령 기간의 장기화⁶⁾는 24시간 위치추적을

6) 최초 법 제정(2007. 4. 27.)시 부착명령의 최장기간은 5년이었고, 1차 개정(2008. 6. 13.)시 최장기간이 10년으로 늘어났으며, 3차 개정(2010. 4. 15.)을 통해 최장기간이 현재와 같이 30년으로 늘어난 바 있음.

통해 전자장치 피부착자가 느끼는 감시의 중압감과 긴장감이 오히려
저하될 수 있어 이에 따라 재범률이 증가할 수 있고, 준수사항 또는
의무사항 위반 건수의 증가 등 다양한 문제점을 발생시킬 수 있음.⁷⁾

- 개정안은 전자장치 부착기간 상한과 하한을 연장하여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이나, 범죄인의 사회복귀 촉진이라는
현행법의 또 다른 가치와 충돌하는 면이 있으므로⁸⁾, 부착기간
연장의 순기능과 부작용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 개정안에 대한 관련기관 의견은 다음과 같음.

- 법원행정처는 19세 미만자에 대한 특정범죄를 저지른 경우에 전자장
치 부착기간의 상·하한이 크게 늘어나게 되는바, 이에 해당하는 범죄의
특성과 죄질, 피부착자의 재사회화의 가능성 및 이들에 대한 행정소요의
가중 등을 두루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함.

7) 김지선, “전자감독제도 시행 10년의 성과와 향후 과제”, 보호관찰 제18권제2호, 2018., p.198~210.

8) 제1조(목적) 이 법은 수사·재판·집행 등 형사사법 절차에서 전자장치를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불
구속재판을 확대하고, 범죄인의 사회복귀를 촉진하며,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
다.

2.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자에 대한 준수사항 부과 의무화

□ 개정안은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형 집행종료 후 전자장치 부착 및 보호관찰 명령 선고 시 주거지역의 제한, 피해자 등 특정인에의 접근금지 준수사항 부과를 의무화하는 내용임(안 제9조의2 제3항 등).

현 행	개정안
제9조의2(준수사항) ① · ② (생략)	제9조의2(준수사항)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19세 미만의 사람을 대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 <u>한정한다</u>) 또는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u>사람에</u> 대해서 제9조 제1항에 따라 부착명령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제1항의 준수사항을 부과하여야 한다.	③ ----- ----- ----- -----한정 한다), ----- -- <u>사람 또는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를 저지른 사람에</u> ----- ----- ----- -----.
1. 2. (생략)	1. 2. (현행과 같음)
<신설>	3. <u>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를 저지른 사람: 제1항제1호 · 제2호 · 제2호의2 · 제3호의 준수사항을 포함할 것.</u> <u>다만,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준수사항을 부과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해당 준수사항을 포함하지 아니할 수 있다.</u>
제21조의4(준수사항) ① (생략)	제21조의4(준수사항) ① (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안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19세 미만의 사람을 대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 한정한다) 또는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서는 제21조의3에 따라 보호관찰명령을 선고하는 경우 제9조의2제1항제3호를 포함하여 준수사항을 부과하여야 한다. <신설> <신설>	② ----- ----- ----- ----- -한정한다), ----- -----<u>사람 또는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를 저지른 사람에</u>----- ----- -----<u>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제9조의2제1항의</u>----- -----. 1. 19세 미만의 사람을 대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 또는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 제9조의2제1항제3호를 포함할 것 2.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를 저지른 사람: 제9조의2제1항제1호·제2호·제2호의2·제3호를 포함할 것. 다만, 제9조의2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준수사항을 부과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해당 준수사항을 포함하지 아니할 수 있다.

□ 현행법은 법원이 형 집행 종료 후 전자장치 부착명령과 보호관찰 명령을 선고하는 경우 피부착명령자의 재범 예방을 위해서 일정 기간의 범위에서 준수사항을 부과할 수 있도록 재량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으며⁹⁾,

9) 제9조의2(준수사항) ① 법원은 제9조제1항에 따라 부착명령을 선고하는 경우 부착기간의 범위에서 준수기간을 정하여 다음 각 호의 준수사항 중 하나 이상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의 준수사항은 500시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19세 미만의 사람을 대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과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서는 “피해자 등 특정인에의 접근금지(제3호)” 준수사항을 의무적으로 부과하도록 하고 있음.¹⁰⁾

□ 개정안은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를 저질러 형 집행 종료 후 전자장치 부착명령과 보호관찰 명령을 부과받은 사람에게 특정시간대 외출제한, 특정장소 출입금지, 주거지역 제한 및 특정인에의 접근금지 등을 의무적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¹¹⁾,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함으로써 해당 범죄로 인한 사회의 불안을 줄이고자 하는 취지로 이해됨.

-
1. 야간, 아동·청소년의 통학시간 등 특정 시간대의 외출제한
 2. 어린이 보호구역 등 특정지역·장소에의 출입금지 및 접근금지
 - 2의2. 주거지역의 제한
 3. 피해자 등 특정인에의 접근금지
 4. 특정범죄 치료 프로그램의 이수
 5. 마약 등 중독성 있는 물질의 사용금지
 6. 그 밖에 부착명령을 선고받는 사람의 재범방지와 성행교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21조의4(준수사항) ① 법원은 제21조의3에 따라 보호관찰명령을 선고하는 경우 제9조의2제1항 각 호의 준수사항 중 하나 이상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제9조의2제1항제4호의 준수사항은 300시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10) **제9조의2(준수사항)**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19세 미만의 사람을 대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 한정한다) 또는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서 제9조제1항에 따라 부착명령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제1항의 준수사항을 부과하여야 한다.

1. 19세 미만의 사람을 대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 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준수사항을 포함할 것. 다만, 제1항제1호의 준수사항을 부과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해당 준수사항을 포함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 제1항제3호의 준수사항을 포함할 것

제21조의4(준수사항)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19세 미만의 사람을 대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 한정한다) 또는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서는 제21조의3에 따라 보호관찰명령을 선고하는 경우 제9조의2제1항제3호를 포함하여 준수사항을 부과하여야 한다.

11) “야간, 아동·청소년의 통학시간 등 특정 시간대의 외출제한(제1호)”, “어린이 보호구역 등 특정지역·장소에의 출입금지 및 접근금지(제2호)”의 준수사항은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법원이 판단하는 경우 의무적 준수사항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

□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의 재범 방지와 피해자 보호라는 입법 취지와 함께 재사회화와 대상자의 다른 범죄에 대한 준수사항과의 체계적 정합성에 부합하는지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첫째, 주거지역 제한 준수사항을 미성년자 유괴대상 범죄자에게 일률적으로 의무 부과하는 것은 거주·이전의 자유와 범죄자의 재사회화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주거지역 제한 조치는 범죄자가 거주할 수 있는 지역을 제한하여 헌법상 거주·이전의 자유¹²⁾를 제한하는 측면이 있으므로, 일률적으로 부과하기보다는 제한의 필요성과 범위를 개별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음.

○ 제20대 국회에서도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주거지역 제한과 특정인에의 접근금지 준수사항을 의무적으로 부과하는 개정안을 심사할 당시, 주거지역 제한의 의무적 부과가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범죄의 재범율에 미치는 효과가 확실하지 않은 점 및 미국에서 나온 보고서들에 따르면 주거지역 제한이 범죄자의 안정적인 주거와 취업을 어렵게 하여 재사회화를 저해하고 오히려 재범을 유발할 수 있다는 연구가 있는 등의 논의를 고려하여 해당 내용은 최종 대안에 반영되지 않았음.¹³⁾

12) 헌법 제14조가 보장하고 있는 거주·이전의 자유는 공권력의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일시적으로 머물 체류지와 생활의 근거 되는 거주지를 자유롭게 정하고 체류지와 거주지를 변경할 목적으로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자유를 내용으로 함

□ 둘째, 개정안이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피해자 등 특정인에의 접근금지’뿐만 아니라 ‘주거지역 제한’의 준수사항까지 의무적으로 부과하는 것이 다른 범죄에 대한 준수사항과의 체계적 정합성에 부합하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음.

○ 현행법은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과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하여는 ‘피해자 등 특정인에의 접근금지’의 준수사항을 의무적으로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는 피해자에 대한 재접근 및 가족 등 관계자에 대한 접근과 이를 통한 보복범죄를 방지하고자 하는 취지임.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범죄자의 접근금지 준수사항 부과 현황>

연도		2023	2024
구분		122건 (100%)	123건 (100%)
	특정인에의 접근금지 준수사항 부과 대상자	74건 (60.7%)	98건 (79.7%)

자료 : 법무부

○ 따라서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범죄와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 간 죄질, 재범 양상, 주거지역 제한과 재범 및 추가 범행 예방 간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함.

13) 제20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제사법소위제1차(2019년3월25일) 회의록, p.43~44.

□ 개정안에 대한 관련기관 의견은 다음과 같음.

- 법원행정처는 특정시간대 외출제한(제1호)이나 출입·접근장소 제한(제2호), 주거지역 제한(제2호의2) 등의 준수사항은 범죄의 유형이나 내용, 죄질 등에 따라서 재범의 위험성 등과 특별한 관련성이 없을 수 있으므로 필요적 부과가 타당한지 형사정책적인 연구 등이 필요하고, 주거지역 제한은 어떠한 예외가 인정되지도 아니하므로 다른 준수사항과의 관계, 재발방지 및 재사회화에의 기여 등의 사정을 아울러 고려하여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예외를 인정하고 있는 제1호 내지 제2호 경우와 달리 취급할 만한 요소가 있는지 추가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임.

문 의 처
02-6788-5075

참고자료	전자장치 부착대상 특정범죄의 종류, 법정형 및 부착기간
-------------	---------------------------------------

	특정범죄 종류	징역형의 법정형	현행법에 따른 전자장치 부착 가능 기간
성 폭 력 범 죄	형법 제297조(강간), 제299조(준강간),	3년 이상 징역	3년 이상 20년 이하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9조(준강간),	2년 이상 징역	1년 이상 10년 이하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제299조(준강제추행)	10년 이하의 징역	1년 이상 10년 이하
	형법 제301조(강간등 상해·치상)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10년 이상 30년 이하
	형법 제301조의2(강간등 살인)	사형 또는 무기징역	10년 이상 30년 이하
	형법 제301조의2(강간등 치사)	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	3년 이상 20년 이하
	형법 제302조(미성년자 등에 대한 간음)	5년 이하 징역	1년 이상 10년 이하
	형법 제303조제1항(업무·고용 관계의 위력 등에 의한 간음)	7년 이하 징역	1년 이상 10년 이하
	형법 제303조제2항(구금된 사람 감호자에 의한 간음)	10년 이하 징역	1년 이상 10년 이하
	형법 제339조(강도강간)	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	10년 이상 30년 이하
	형법 제340조제3항(해상강도강간)	사형 또는 무기징역	10년 이상 30년 이하
	성폭력처벌법 제3조제1항(주거침입강간 등)	무기 또는 7년 이상 징역	10년 이상 30년 이하
	성폭력처벌법 제3조제2항(특수강도강간 등)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	10년 이상 30년 이하
	성폭력처벌법 제4조제1항(특수강간)	무기 또는 7년 이상 징역	10년 이상 30년 이하
	성폭력처벌법 제4조제1항(특수강제추행)	5년 이상 징역	3년 이상 20년 이하
	성폭력처벌법 제5조제1항(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7년 이상 징역	3년 이상 20년 이하
	성폭력처벌법 제5조제2항(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추행)	5년 이상 징역	3년 이상 20년 이하
	성폭력처벌법 제6조제1항(장애인에 대한 강간)	무기 또는 7년 이상 징역	10년 이상 30년 이하
	성폭력처벌법	5년 이상 징역	3년 이상 20년 이하

특정범죄 종류		징역형의 법정형	현행법에 따른 전자장치 부착 가능 기간
성 폭 력 범 죄	제6조제2항(장애인에 대한 유사강간)		
	성폭력처벌법 제6조제3항(장애인에 대한 강제추행)	3년 이상 징역	3년 이상 20년 이하
	성폭력처벌법 제6조제5항(장애인에 대한 위력 등에 의한 간음)	5년 이상 징역	3년 이상 20년 이하
	성폭력처벌법 제6조제6항(장애인에 대한 위력 등에 의한 강제추행)	1년 이상 징역	1년 이상 10년 이하
	성폭력처벌법 제7조제1항(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	10년 이상 30년 이하
	성폭력처벌법 제7조제1항(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유사강간)	7년 이상 징역	3년 이상 20년 이하
	성폭력처벌법 제7조제3항(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	5년 이상 징역	3년 이상 20년 이하
	성폭력처벌법 제8조제1항(강간 등 상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	10년 이상 30년 이하
	성폭력처벌법 제8조제2항(강간 등 치상)	무기 또는 7년 이상 징역	10년 이상 30년 이하
	성폭력처벌법 제9조제1항(강간 등 살인)	사형 또는 무기징역	10년 이상 30년 이하
	성폭력처벌법 제9조제2항(강간 등 치사)	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	10년 이상 30년 이하
	성폭력처벌법 제9조제3항(강간 등 치사)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	10년 이상 30년 이하
	성폭력처벌법 제10조제1항(업무·고용 관계의 위력 등에 의한 추행)	3년 이하 징역	1년 이상 10년 이하
	성폭력처벌법 제10조제2항(구금된 사람 감호자에 의한 추행)	5년 이하 징역	1년 이상 10년 이하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제7조제1항(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10년 이상 30년 이하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제7조제2항(아동·청소년에 대한 유사강간)	5년 이상 징역	3년 이상 20년 이하
성	아동청소년성보호법	2년 이상 징역	1년 이상 10년 이하

특정범죄 종류		징역형의 법정형	현행법에 따른 전자장치 부착 가능 기간
폭 력 범 죄	제7조제3항(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제8조제1항(13세이상 장애인 아동·청소년에 대한 간음)	3년 이상 징역	3년 이상 20년 이하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제8조제1항(13세이상 장애인 아동·청소년에 대한 추행)	10년 이하 징역	1년 이상 10년 이하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제9조(강간 등 상해·치상)	무기 또는 7년 이상 징역	10년 이상 30년 이하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제10조제1항(강간 등 살인)	사형 또는 무기 징역	10년 이상 30년 이하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제10조제1항(강간 등 치사)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	10년 이상 30년 이하
미 성 년 자 대 상 유 괴 범 죄	형법 제287조(미성년자의 약취 유인)	10년 이하 징역	1년 이상 10년 이하
	형법 제288조제1항(추행 등 목적 약취 유인)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1년 이상 10년 이하
	형법 제288조제2항·제3항(노동력착취, 국외 이송 등 목적 약취 유인)	2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1년 이상 10년 이하
	형법 제289조제1항(인신매매)	7년 이하 징역	1년 이상 10년 이하
	형법 제289조제2항(추행 등 목적 인신매매)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1년 이상 10년 이하
	형법 제289조제3항·제4항(노동력착취, 국외 이송 등 목적 인신매매)	2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1년 이상 10년 이하
	형법 제290조제1항(약취, 유인, 매매, 이송 등 상해)	3년 이상 25년 이하 징역	3년 이상 20년 이하
	형법 제290조제2항(약취, 유인, 매매, 이송 등 치상)	2년 이상 20년 이하 징역	1년 이상 10년 이하
	형법 제291조제1항(약취, 유인, 매매, 이송 등 살인)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 징역	10년 이상 30년 이하
	형법 제291조제2항(약취, 유인, 매매, 이송 등 치사)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10년 이상 30년 이하
	형법 제292조(약취, 유인, 매매, 이송된 사람의 수수·은닉 등)	7년 이하 징역	1년 이상 10년 이하
	형법 제296조(약취, 유인, 매매, 이송 등 예비·음모)	3년 이하 징역	1년 이상 10년 이하

특정범죄 종류		징역형의 법정형	현행법에 따른 전자장치 부착 가능 기간
	형법 제324조의2(인질강요)	3년 이상 징역	3년 이상 20년 이하
	형법 제336조(인질강도)	3년 이상 징역	3년 이상 20년 이하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2(약취, 유인죄의 가중처벌)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 징역	1년 이상 10년 이하 10년 이상 30년 이하
살인 범죄	형법 제88조·제89조(내란목적 살인 및 미수범)	사형 또는 무기징역	10년 이상 30년 이하
	형법 제250조제1항(살인), 제253조(위계 등에 의한 촉탁살인)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10년 이상 30년 이하
	형법 제250조제2항(존속살인), 제253조(위계 등에 의한 촉탁살인)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 징역	10년 이상 30년 이하
	형법 제252조(촉탁, 승낙에 의한 살인 등)	1년 이상 10년 이하	1년 이상 10년 이하
	형법 제255조(살인 등 예비·음모)	10년 이하 징역	1년 이상 10년 이하
	형법 제324조의4(인질살해)	사형 또는 무기징역	10년 이상 30년 이하
	형법 제324조의4(인질치사)	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	10년 이상 30년 이하
	형법 제338조(강도살인)	사형 또는 무기징역	10년 이상 30년 이하
	형법 제338조(강도치사)	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	10년 이상 30년 이하
	형법 제340조제3항(해상강도살인)	사형 또는 무기징역	10년 이상 30년 이하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2제2항제2호(약취·유인 미성년자 살인)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 징역	10년 이상 30년 이하
	형법 제333조(강도)	3년 이상 징역	3년 이상 20년 이하
강도 범죄	형법 제334조(특수강도)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10년 이상 30년 이하
	형법 제335조(준강도)	3년 이상 징역,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3년 이상 20년 이하
	형법 제337조(강도상해,치상)	무기 또는 7년 이상 징역	10년 이상 30년 이하
	형법 제340조제1항(해상강도)	무기 또는 7년 이상 징역	10년 이상 30년 이하
	형법 제340조제2항(해상강도상해·치상)	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	10년 이상 30년 이하

특정범죄 종류		징역형의 법정형	현행법에 따른 전자장치 부착 가능 기간
	형법 제341조(강도 상습범)	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	10년 이상 30년 이하
	형법 제343조(강도 예비, 음모)	7년 이하 징역	1년 이상 10년 이하
스토 킹 범 죄	스토킹범죄처벌법 제18조제1항(스토킹범죄)	3년 이하 징역	1년 이상 10년 이하
	스토킹범죄처벌법 제18조제2항(흥기 등 이용 스토킹범죄)	5년 이하 징역	1년 이상 10년 이하